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35호

붙임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자문범위)”를 “(직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고문료 지급)”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0,000원의 고문료”를 “300,000원의 자문수당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 ①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

③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자문 중 알게 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u></p>	<p><u>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p>	<p>제1조(목적) ----- ----- 운영 등--</p>
<p>제2조(자문범위)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2조(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u></p>
<p>제4조(해촉) ① (생략)</p>	<p>제4조(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5조(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u>200,000원의 고문료를</u></p> <p><u><신 설></u></p>	<p>제5조(수당 등) ① ----- ----- <u>300,000원의 자문수당을</u> ----- <u>②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u></p>

장) ①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

③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자문 중 알게 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